

# 위험물 제조소등 용도폐지 안내문

- **관련 법령** :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1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
  - **용도폐지** : 장래에 대하여 위험물시설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시키는 것
  - **신고 기한** : 용도를 폐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신고
  - **안전조치 및 신고 주최자** : 관계인(소유자, 점유자, 관리자) ☞ 통상 위험물제조소등의 설치자
  - **용도폐지 안전조치**
    - 위험물시설의 철거 등 용도폐지에 필요한 안전조치
      1. 위험물 및 가연성 증기를 완전히 제거
      2. 시설을 해체·철거하거나 당해 시설을 위험물을 저장·취급에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
    - 안전조치(철거) 전→중→후 공사 사진 촬영하여 소방서에 제출
    - ※ 안전조치 예외 : 위험물시설 외의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
  - **신고 서류**
    -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[별지 제29호서식] 용도폐지 신고서  
[서식 다운로드]
    - 1.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→ 「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 검색 → 별지
    - 2.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→ 소방정보센터 → 각종서식 → 『용도폐지』 검색
    - 완공검사합격확인증 (구. 완공검사필증)
    - 안전조치 확인 자료 : 위험물시설의 용도폐지 전, 중, 후 사진(필요시 제출)  
ex) 지하탱크를 제거하거나 모래 등으로 탱크를 채우는 현장 사진 등
  - **서류 접수 후 처리 절차**
    - 소방서 위험물담당부서 현장 확인 → 용도폐지 수리 완료 ☞ 처리기한 5일
    - 안전조치 부적합할 경우 ☞ 필요한 안전조치 이행 명령 가능
  - **벌칙 사항**
    - 용도폐지 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 
☞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[위험물안전관리법 제39조제1항제5호]
- ※ 문의 사항 : 시흥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민원팀 위험물담당자 ☎ 031-310-0316, 0312